

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〔법적근거〕

- 지방자치법 제57조 제2항

〔출석일시 및 장소〕

- 일 지 : '96. 11. 14 ~ 11. 16 (3일간)
- 장 소 : 구미시의회 본회의장

〔출석요구대상〕

- 구미시장 및 부시장, 조·관·청·과·팀장, 선출출장소장, 주택사업단장, 각 사업소장

〔출석요구 사유〕

-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진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코자 함